

서울특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2227
----------	------

2024년 12월 17일
도시안전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4년 10월 16일, 김용호 의원 외 22명
나. 회부일자 : 2024년 10월 18일
다. 상정일자 : 제327회 정례회 제7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2024년 12월 17일 상정, 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김용호 의원)

가. 제안이유

건설 약자인 일용근로자에게 안정적 근로환경을 제공하고자 기상조건 및 미세먼지 등으로 작업이 중지될 시 최저 생계유지를 위한 소득 보전을 통해 고용 안정성을 강화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1) 시장으로 하여금 건설일용근로자의 생계안정을 위해 기상조건 및 미세먼지 등으로 작업이 중지될 시 수당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9조제2항)

3. 검토보고요지 (수석전문위원 이상근)

- 본 개정안은 건설일용근로자의 고용 안정성 강화를 위해 현행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국민건강·국민연금보험료의 개인 부담금을 지원¹⁾하고 있는 것에 추가하여, 건설현장에서 기상조건 및 미세먼지 등으로 작업이 중지될 경우에도 일용근로자의 최저 생계유지를 위한 소득 보전을 위해 수당을 지원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표]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 (고용개선지원) ① (생 략) ② 시장은 건설일용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 확대를 위해 건설일용근로자의 국민건강·국민연금보험료 부담금을 사업비에 반영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 ⑤ (생 략)	제9조 (고용개선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 ----- 위한 ----- ----- 부담금과 기상조 건 및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작업 중 지에 따른 건설일용근로자의 생계안정을 위한 수당-----. ③ ~ ⑤ (현행과 같음)

- 건설산업은 '23.7월 기준으로 서울시 전체 취업자의 6.4%(33만 1천명)²⁾를 차지하며, 타 산업에 비해 높은 취업유발계수(10억원 당 7.8명)³⁾를 보이고 있어 대표적인 일자리 창출 산업으로 평가

1) 서울시는 '21.5.20. 「서울특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9조제2항을 신설하여, 건설 일용근로자의 국민건강·국민연금보험료의 근로자 부담분(8.045% : 건강 3.545%+연금 4.5%)을 지원 중에 있음.
 2) '서울시 경제활동인구조사 고용동향' '23.7월 기준 전체 취업자 중 건설업 취업자 331천명(6.4%)
 3) 취업유발계수 : 특정 산업에 일정 금액의 최종 수요(일반적으로 10억원)가 발생할 때, 그 산업에 의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창출되는 고용의 수를 나타내는 지표, 이 계수는 경제 전반의 고용 상황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각 산업이 고용 창출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데 사용됨.

받고 있으나 낮은 임금, 부족한 복지 수준, 고용 불안정, 안전사고 위험 등의 문제로 청년층의 취업 기피 현상이 심화됨과 동시에 가용인력의 고령화가 가속되고 있는 상황임.

- 특히 건설근로자는 타 산업에 비해 임시일용직 비율이 51.3%⁴⁾로 매우 높은 구조적 특징을 가지며, 일일 임금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나 근로 시간(월 약 114.7시간)이 일부 제한적이어서 월 평균 임금(약 349만원) 수준이 타 산업에 비해 낮은 실정임([표] 참조).

[표] 산업별 근로자 1인당 월평균 근로시간 및 월 임금('24.9월 전국 기준)

구 분	총 종사자 수(천명)	총 근로시간(시간)	임금 총액(천원)
수 산업 전체 평균	20,135	139.5	4,301
제조업	3,768	152.1	5,043
건설업	1,450	114.7	3,491
도매 및 소매업	2,274	142.5	4,210
그 외 나머지 산업 생략	∴	∴	∴

※ 고용노동부 '2024.10월 사업체 노동력조사 결과'

- 이에 '21년 5월 현행 조례 제9조에 건설일용근로자의 고용 여건 개선을 목적으로 국민건강보험 및 국민연금보험료 분담금 지원(연평균 약 4억원)과 고용개선에 기여한 우수 건설사업자에 대한 고용개선장려금 지원(연평균 약 7억원) 규정을 신설한바 있으며 그에 따라 지금까지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건설일용근로자의 고용 여건 개선을 도모해 오고 있음([표] 참조).

4) 건설정책연구원 건설업 국내 건설업 근로자 중 임시일용직 비율 51.3%

[표] 건설일용근로자 고용개선을 위한 서울시 지원현황(현행 조례 제9조 관련)

지원 근거	내용	지급시기	지원액(천원)
현행 조례 제9조제2항 건설일용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	- 국민건강보험료·국민연금 지원 - 근로자 분담분 지원 (8.045% : 건강 3.545% + 연금 4.5%)	'24. 1. ~ '24. 8.	452,134
		'23. 1. ~ '23.12.	508,362
		'22. 1. ~ '22.12.	426,675
		'21. 1. ~ '21.12.	270,864
현행 조례 제9조제3항 우수 건설사업자에 대한 고용개선장려금 지원	- 고용개선 우수 건설사업자 인센티브 지원 ※ 단, 내국인 고용 90% 이상 사업장 대상	'24. 1. ~ '24. 8.	246,625
		'23. 1. ~ '23.12.	764,619
		'22. 1. ~ '22.12.	987,326
		'21. 1. ~ '21.12.	367,740

- 본 개정안은 여기에 추가하여 기상조건 및 미세먼지 등으로 작업 중지가 이루어져 건설일용근로자가 임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최저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수당을 보전해 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설일용근로자의 고용 및 처우 개선을 보완하려는 것임.
- 실제로 서울시는 2025년부터 ‘서울시 건설현장 안심수당 도입 계획’([표] 참조)을 통해 폭염경보, 시간당 5mm 이상의 강우, 한파경보·주의보, 일 0.5cm 이상의 강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등으로 작업이 중단된 경우,
- 월 8일이상 근무⁵⁾한 생활임금(’24년기준 서울시 239만원)⁶⁾ 이하 건설근로자에게 일 최대 4시간(시간당 약 2.5만원)⁷⁾, 월 최대 50만원의 지원을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됨.

5) 건설근로자의 건강보험·국민연금 가입 기준 : 월 8일 이상 근무

6) 서울특별시 생활임금 : ’25년 생활임금 고시 월급 2,461,811원 【적용 246만원】

7) 서울시 건설근로자 평균 기본급여 20만원/일(8시간)=2.5만원

- 따라서 본 개정안이 통과되면 극한기후로 인한 작업 중단으로 발생한 임금 손실을 보전할 법적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건설근로자의 노동 환경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이를 통해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고자 하는 입법적 목적이 명확히 드러나는바, 시의적절한 입법 조치라 사료됨.
- 참고로, '21.7월 타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안전부에 질의한 결과⁸⁾를 살펴보면 “폭염 등 재난으로 공사가 일시 정지된 경우 작업시간 조정 등에 따른 계약내용 변경 시 해당 변경사항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하다”는 회신이 있었다는 점에서 본 개정안의 정합성을 뒷받침한다 할 것이며, 이에 서울시는 본 개정안이 시행되더라도 별도의 예산편성 없이 기존 사업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추계하고 있음.

[표] 서울시 건설현장 안심수당 도입 계획('24.9.)

◆ 서울시 폭염 등 극한기후로 인해 **작업중지 시 최저 생계유지 소득보전**

- (개념) 작업중지 시 생활임금 수준까지 안심수당 지급(일 최대 4시간)

월소득
198만원

16.5만원/일 × 12일

+

안심수당
41만원

16.5만원/일 × 5일 × 50%

→

실질 월소득
239만원

< 안심수당 지급 예 : 보통인부 12일 현장근무 및 5일 극한기후로 작업 중지 시 >

- 8) 행정안전부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관련 질의' 경기도 회계과 -24567('21.7.22.)
- (질의요지) 폭염·호우·코로나19 등 재난으로 인해 공사를 일시 정지한 경우 당일 출근한 건설노동자가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근로를 하지 못하였을 때 잔여 시간에 대하여 임금을 보전하고 이를 노무비 등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으로 보아 근로계약 금액조정이 가능한지
- (질의답변) 귀 질의와 관련하여 폭염 등 재난으로 공사가 일시정지된 경우 작업시간 조정·공시기간 연장 등으로 계약내용이 변경될 경우 변경된 내용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구체적인 사항은 근로형태, 현장상황, 계약문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발주기관에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 월 8일 이상(건강보험·국민연금 가입) 현장근무 근로자+서울시 생활임금* 이하 근로자(내국인)

* (서울특별시 생활임금 조례) '24년 생활임금 고시 월급 2,390,124원 【적용 239만원】

'25년 생활임금 고시 월급 2,461,811원 【적용 246만원】

- (조건) ① '서울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사용

② '전자카드제'시행(태그)하여 당일 출근 확인

③ '건설정보관리시스템'에서 출력한 노무비 명세서로 기성 및 노무비 청구

- (적용) 서울시, 투·출기관 발주 5천만원 이상 건설공사(자치구 제외)

- (기준) 극한기후(폭염/강우/한파/강설/미세먼지) + 공사감독(감리)의 작업중지 명령

- 극한기후에 따른 사례별 지급 기준 예시

ex) 출근기준/근무시간:8~17시/기본급여:20만원/일(2.5만원/hr)

유형	지급 사례	안심수당 (일 지급수당)
폭염	- 폭염경보에 따라 14시부터 3시간 작업중지	7.5만원
	- 폭염경보에 따라 12시부터 5시간 작업중지	10만원
강우	- 5mm/hr 이상 강우로 11시부터 6시간 작업중지	10만원
	- 5mm/hr 이상 강우로 15시부터 2시간 작업중지	5만원
한파	- 한파주의보로 8시부터 10시까지 2시간 작업중지	5만원
	- 한파경보로 8시부터 13시까지 5시간 작업중지	10만원
강설	- 적설량 0.5cm/일 이상으로 9시부터 17시까지 8시간 작업중지	10만원
	- 적설량 0.5cm/일 이상으로 8시부터 14시까지 제설 후 계속 작업	-
미세먼지	-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으로 14시부터 3시간 작업중지	7.5만원
	-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으로 실내작업	-

- (소요예산) 10억원(고용개선지원비* 집행잔액 활용)

월 8일이상 생활임금 이하 근로자 수 × 1인당 월 최대지원금 × 극한기후 개월수

= 400명/월 × 50만원 × 5개월 ≃ 10억원

* 고용개선지원비 : 주휴수당 지급, 건강보험·국민연금 근로자분 지원 등을 위해 공사비에 기반영된 예산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소위원회의 심사보고 요지 : 해당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의원 전원 찬성)

9. 소수의견의 요지 : 해당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용호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2227
----------	------

발 의 년 월 일: 2024년 10월 16일

발 의 자: 김용호, 강석주, 고광민,
김영철, 김원태, 김재진,
김태수, 김형재, 김혜영,
남궁역, 남창진, 민병주,
박 석, 유만희, 유정인,
이봉준, 이성배, 이용균,
이원형, 이은림, 이종환,
최진혁, 홍국표 의원(23
명)

1. 제안이유

- 건설 약자인 일용근로자에게 안정적 근로환경을 제공하고자 기상조건 및 미세먼지 등으로 작업이 중지될 시 최저 생계유지를 위한 소득 보전을 통해 고용 안정성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시장으로 하여금 건설일용근로자의 생계안정을 위해 기상조건 및 미세먼지 등으로 작업이 중지될 시 수당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9조제2항)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 다. 기타 : 신 구조문대비표

서울특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위해”를 “위한”으로, “분담금”을 “분담금과 기상조건 및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작업 중지”에 따른 건설일용근로자의 생계안정을 위한 수당”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9조 (고용개선지원) ① (생략)</p> <p>② 시장은 건설일용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 확대를 <u>위해</u> 건설일용근로자의 국민건강·국민연금보험료 <u>분담금</u>을 사업비에 반영하여 지원할 수 있다.</p> <p>③ ~ ⑤ (생략)</p>	<p>제9조 (고용개선지원)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u>위한</u> ----- ----- ----- <u>분담금과 기상조건 및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작업 중지</u>에 따른 건설일용근로자의 <u>생계 안정을 위한 수당</u>----- -----.</p> <p>③ ~ ⑤ (현행과 같음)</p>

서울특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1. 판단 근거

- 서울특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설일용근로자의 생계안정을 위해 기상조건 및 미세먼지 등으로 작업이 중지될 시 수당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안 제9조제2항) 개정하려는 것으로 관련부서(건설기술정책관) 문의 결과 총공사비에 포함되어 서울시의 재정 수입 순감소나 재정 지출 순증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2.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담당관
담 당 관	오희선
추계세제팀장	김중헌
추 계 분 석 관	김지혜

☎ 02-2180-7953
e-mail : kjh0123@seoul.go.kr

※ 이 서류는 의안 발의 참고 자료입니다.